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입주자모집공고

HILLSTATE 어울림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 - 8141호(2024.0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35층 26개동 총 2,330세대(조합원 517세대, 임대 118세대 및 보류지 20세대 제외) 중 일반분양 1,675세대
[특별공급 775세대(기관추천 141세대, 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288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22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4000058	1	59.8400A	59A	59.8400	20.1300	79.9700	37.7600	117.7300	35.3368	59	3	2	10	1	8	24	35	5
		2	59.8400B	59B	59.8400	19.8000	79.6400	37.7600	117.4000	35.1910	125	11	6	22	3	17	59	66	8
		3	59.8300C	59C	59.8300	20.0100	79.8400	37.7500	117.5900	35.2783	105	10	5	18	3	14	50	55	6
		4	59.7500D	59D	59.7500	20.4300	80.1800	37.7100	117.8900	35.4292	46	2	2	8	1	6	19	27	3
		5	79.5900A	79A	79.5900	25.4700	105.0600	50.2300	155.2900	46.4210	48	2	2	8	1	6	19	29	4
		6	79.7400B	79B	79.7400	25.1700	104.9100	50.3200	155.2300	46.3569	711	70	35	127	21	99	352	359	36
		7	79.4600C	79C	79.4600	26.7000	106.1600	50.1500	156.3100	46.9070	78	5	3	14	2	10	34	44	4
		8	79.5200D	79D	79.5200	25.9200	105.4400	50.1800	155.6200	46.5906	136	12	6	24	4	19	65	71	7
		9	84.9600A	84A	84.9600	26.9400	111.9000	53.6200	165.5200	49.4419	93	5	4	16	2	13	40	53	13
		10	84.9600B	84B	84.9600	28.1700	113.1300	53.6200	166.7500	49.9854	226	21	11	40	6	31	109	117	11
		11	84.9900C	84C	84.9900	27.5400	112.5300	53.6400	166.1700	49.7234	7	-	-	1	-	-	1	6	2
		12	114.7700	114	114.7700	35.6500	150.4200	72.4400	222.8600	66.4628	41	-	2	-	1	-	3	38	3
	합계										1,675	141	78	288	45	223	775	900	10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기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면적 합산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주택형(㎡)	59.8400A	59.8400B	59.8300C	59.7500D	79.5900A	79.7400B	79.4600C	79.5200D	84.9600A	84.9600B	84.9900C	114.7700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물, 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3	3	1	1	21	2	4	2	6	-	-	12
	국가유공자 등	1	2	2	-	-	15	1	2	1	4	-	-	12
	장기복무 제대 군인	-	1	1	-	-	7	-	1	-	2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1	1	-	-	7	-	1	-	2	-	-	44
	중소기업 근로자	1	4	3	1	1	20	2	4	2	7	-	-	6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6	5	2	2	35	3	6	4	11	-	2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2	18	8	8	127	14	24	16	40	1	-	28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3	3	1	1	21	2	4	2	6	-	1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8	17	14	6	6	99	10	19	13	31	-	-	223
합계		24	59	50	19	19	352	34	65	40	109	1	3	77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속한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 전까지 민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사업주체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신청을 완료하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소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입주자선정 방법

V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VI 계약체결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매월 발생한 이자를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관계(공급금액, 연체료 등)를 모두 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계약자를 대신해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함께 계약자를 대신해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납부 완료, 입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59D	79A	79B	79C	79D	84A	84B	84C	114
발코니 확장 공사비		13,100,000	9,300,000	10,700,000	9,100,000	13,900,000	10,900,000	13,100,000	12,500,000	14,700,000	14,700,000	16,400,000	17,200,000
계약금 (10%)	계약시	1,310,000	930,000	1,070,000	910,000	1,390,000	1,090,000	1,310,000	1,250,000	1,470,000	1,470,000	1,640,000	1,720,000
중도금 (10%)	2024.10.15	1,310,000	930,000	1,070,000	910,000	1,390,000	1,090,000	1,310,000	1,250,000	1,470,000	1,470,000	1,640,000	1,720,000
잔금 (80%)	입주지정일	10,480,000	7,440,000	8,560,000	7,280,000	11,120,000	8,720,000	10,480,000	10,000,000	11,760,000	11,760,000	13,120,000	13,76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 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최초 계약시)	562166-86-171073	신한은행	현대건설(주)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332643 /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IX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X 기타사항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등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 A블럭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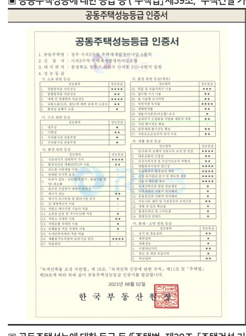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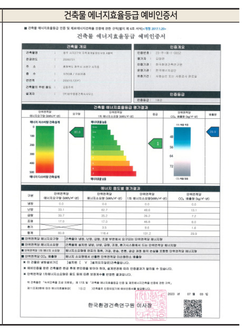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등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 B블럭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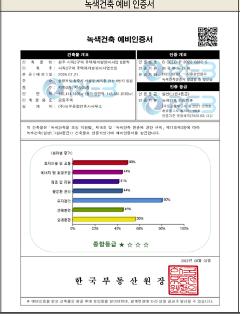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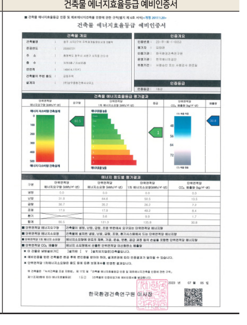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 ·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동우이앤씨	신원기술단	아이비엔지니어링	아이비엔지니어링
금액	8,659,817,527	1,192,250,000	354,750,000	827,75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주)	금호건설(주)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58, 2층(사직동,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4(계동, 현대빌딩)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법인등록번호	150171-0010304	110111-0007909	110111-013487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hillstate.co.kr/s/chs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

입주자 모집공고		2024.02.28.(수)
특별공급		2024.03.04.(월)
일반공급	1순위	2024.03.05.(화)
	2순위	2024.03.06.(수)
당첨자발표		2024.03.13.(수)
계약체결		2024.03.24.(일) ~ 2024.03.27.(수), 4일간
분양문의 ☎ 043-269-4535		총 2,330세대 중 일반분양 1,675세대 [59㎡A·B·C·D, 79㎡A·B·C·D, 84㎡A·B·C, 114㎡]